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하수도법」이 개정(법률 제17852호, 2021.1.5. 공포, 2021.7.6. 시행)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,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」”을 “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별표 제3호”를 “별표 1 제3호”로 한다.

제5조 전단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것”을 “제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”을 각각 “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각각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23조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3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24조제4항 중 “「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「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설치하여야”를 “설치해야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법 제39조제7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세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9조제9항”을 “법 제39조제12항”으로,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④ 법 제39조제7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법 제44조제4항”을 “법 제44조제5항”으로,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33 조”를 “법 제33조”로 한다.

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통령령이”를 각각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42조의4의 제목 “(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전문기관)”을 “(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전문기관)”으로 한다.

별표 2 가목 중 “(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 소재)”를 “[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 소재(공동사무실 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도 가능)]”으로 하고,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“「위생사에 관한법률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6조의2제1항”으로 한

다.

별표 3 제10호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45조제7항”을 “법 제45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별표 7 비고 제2호다목 중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제3호”를 “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8 제2호어목 중 “법 제34조제4항”을 “법 제34조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터목 중 “법 제39조제6항”을 “법 제39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고목 중 “법 제44조제3항”을 “법 제44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구목 중 “법 제69조제1항제1호·제2호”를 “법 제69조제1항제3호·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)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.	제4조(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) -----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	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「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「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
4. ~ 9. (생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그 밖에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I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	10. ----- ----- 별표 1 제3호-----

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	----- -----
제5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)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“ <u>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</u> ”이란 일간신문, 공보,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·면·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	제5조(타인의 토지에의 출입) --- ----- <u>대통령령으로</u> -----
제10조(설치기준 등) ① (생략)	제10조(설치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.	② -----
1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<u>것</u>	1. ----- <u>제품</u>
2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<u>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</u> 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	2. ----- <u>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</u> -----
3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	3. -----

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「수도법」 제56 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가 인증한 제품	----- 단체표준인증을 받 은 제품-----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	5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 원법」 ----- -----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용의 공고) ① 법 제15 조제1항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 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.	제11조(사용의 공고) ① ----- ---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) ①·② (생 략)	제12조(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) ①·② (현 행과 같음)
③ 삭 제	④ -----
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는 경미한 유 지”란 하수관로, 맨홀 및 물받이 의 청소를 말한다.	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-- ----- 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점용허가) ① 법 제24조에 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는 점용행	제19조(점용허가) ① ----- -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--

위”란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 다.	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본문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.	제22조(배수설비의 설치 등) ① - ----- ---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 ----- -----.
1.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(조경공사업은 제 외한다)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2.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 처리시설설계·시공업의 등록 을 한 자(법 제34조에 따른 개 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.	④ ----- -- <u>대통령령</u> 으로 ----- ----- ----- --.
1.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(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2.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	2. ----- ----- --
제23조(특정공산품의 종류)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이 정하는 특정공산품”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.	제23조(특정공산품의 종류) ---- ----- <u>대통령령</u> <u>으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제2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) ① (생 략)	제2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2. (생 략) ③ (생 략)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<u>설치하여야</u> 한다. ⑤ (생 략) 제25조(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) ① (생 략)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	② 법 제34조제4항에서 “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기준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 ---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 ---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해야</u>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25조(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---	--

제40조(보고·검사 등) 법 제69조	제40조(보고·검사 등) -----
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	-----대통령령으로 -----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	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·수입·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	4. 법 제33조-----
5. (생략)	-----
제42조(권한의 위탁) ① 법 제74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	제42조(권한의 위탁) ① -----대통령령으로 -----
1.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: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「수도법」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	1. -----
2.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: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	2. -----

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	② -----대통령령으로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제42조의4(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전문기관) (생략)	제42조의4(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전문기관)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생활하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21